

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
번호

295

발의년월일 : 2018년 12월 21일
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대호, 최웅식, 김상훈, 양민규,
강동길, 우형찬, 조상호, 이승미,
이은주, 김태호, 문장길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어린이·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·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고, 알기쉬운 용어로 순환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근거를 명확히(제11조제5항)
- 나. 어린이·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·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제12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 할”을 “위촉 해제 할”로 한다.

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4.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
제12조제1항 중 “시설·장비”를 “과일·채소 등 간식, 시설·장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⑥ (생 략)

제12조(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) ①
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
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,
시설·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4.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
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
경우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) ①

----- 과
일·채소 등 간식, 시설·장비 --.

② (현행과 같음)